

'99 국정감사 자료집

#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99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99 국정감사 자료집

#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99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집을 묶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자료집이

인권운동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펴낸 날자 : 1999년 11월 10일

펴내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 741-5363 / 팩스 741-5364

천리안, 하이텔 ID rights / 나우누리 ID 인권사랑 / 참세상 ID tsrights

E-mail : humanrights@sarangbang.or.kr

홈페이지 <http://www.sarangbnag.or.kr>

## ◆ 차례

### 현정부의 인권정책 관련

- 1 • 현정부 출범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거나 신설된 제도, 각종 프로그램, 운동, 위원회 등의 현황
- 31 • 남녀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인권법안 등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차이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32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 36 • 현재 추진중인 인권법, 부패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및 관련보도자료 사본일체, 특히 UN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73 • 변호사법 개정 및 UN인권위원회 인권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75 • 국제사면위원회 입장표명 내용 및 법무부의 입장
- 97 • 인권법 제정추진 관련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주요 쟁점사항 대비표
- 99 • 세계 각국의 인권법 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 국가 인신구속 기관 관련

- 101 • 현정부 출범이후 교정행정 현대화 계획을 수립한 제도
- 103 • 재소자 수용현황 개선대책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과 평가
- 105 •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현황 : 교도소·구치소 자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98. 1-'99. 8 현재까지)
- 113 • '98. 1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복무지도·감독보고서·감찰보고서
- 114 • 여성범죄자 발생현황,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97. 1.1-'99. 8.31)
- 116 • 각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징계위 소집건수와 처리결과/재소자 징벌집행 현황/교도관 폭행·가혹행위 적발 현황과 이로 인해 고소·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 119 • '98. 9-'99. 9월 현재까지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 각 교정시설별 재소자에 대한 징계위 소집건수와 처리결과
  - 재소자 징벌집행 현황(교도소별 사유 및 징벌내용)
  - 재소자 수용을 위한 감방의 최소규모와 최대규모 및 수용인원
  - 징벌방 내부구조도
  - 징벌방 규모
  - 징벌시 사용하는 계구 종류 및 용처
- 122 •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98. 1-'99. 9 현재)
- 123 • '99. 8월 현재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실 현황

- 124 • 재소자들의 노역으로 벌어들인 최근 5년간의 수입금 내역 및 사용처, 재소자 1인의 연평균 노역일수
- 125 •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주한미군 재소자의 수용시설과 내국인 수용시설과의 비교
- 126 •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해 여론의 의견수렴 상황과 민영교도소 설립추진 현황
- 127 •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현황
- 128 • 수형자 외출, 외박시행지침
- 130 • 8월말 현재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 132 •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작업별, 투입인원, 생산량, 작업상여금 총액, 처리내역)
- 134 •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내용 및 처리내역('98. 1-'99. 9 현재)
- 135 •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도주, 폭행, 자살건수)
- 136 •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및 '98.1월부터 '99.9월 현재 가석방 현황
- 137 • 전국 교도소별 의무시설과 관련하여
  - 의무관 현황           - 의사 1인 대비 재소자 비율
  - 재소자 1인별 의무실 이용현황       - 의무실 비치 의료품 목록
  - 재소자 1인당 의료품비
- 140 • 각 구치소별로
  - 구치소 근무의사 현황
  - 의사중 본인이름으로 병원 등을 개업, 실질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현황
- 145 • 전국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 배정된 전체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의료관계인원, 의료인 1인당 1일평균 진료건수
- 146 • 교도소, 구치소내에 여자사동과 남자사동이 같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지 따로 있는지 현황
- 147 •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실험 현황
- 148 • '98. 1월부터 '99. 9월 현재 교도소(구치소 포함)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149 • 교정기관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 150 • 현정부 출범이후 교도관 비리현황과 처리결과
- 151 •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98. 1-'99. 9현재)
- 153 • 각 교도소·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현황
- 154 • 교도소내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 현황
- 155 •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사망자 실태
- 169 • 이감규정 및 '98. 8월부터 '99. 9월까지 전국 교도소별 이감현황
- 171 • 전국 교정시설의 연도별 수용현황
- 172 • '99. 8월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별 수용능력 및 재소자 현황
  - 전국 교도소·구치소 중 수용능력 대비 재소자 최소 및 최대 인원 현황
  - 수용 적정인원, 현재 수용인원, 평당 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현 인원, 교도관 1인당 재소자 담당인원, '98. 8월 이후 교정 공무원의 증감현황

- 과밀현황과 해소대책
- 176 • '99. 9월 현재 전국 교도소의 분류 현황(초범교도소, 재범교도소, 중구급시설 등)과 교도소별 훈련내역
- 177 • '98. 1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 건수와 내용별 분류, 사후 처리내역
- 178 • 각 교정시설별 냉·난방 시설
- 179 •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배당된 난방비 예산과 운영실태
- 180 • '99. 9월 현재 전국 교도소내 각 거실의 급수시설, 화장실 상태, TV 설치 현황
- 181 • '99. 9월 현재 교도소, 구치소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과 소각장 운영기준, 실태
- 183 • 의정부교도소에서 취재중이던 [PD수첩] 취재팀에게 속칭 "건달정역"실상을 폭로했던 일부 재소자들이 조사실(독방)에 격리수용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 상세한 현황       - 조사실에 격리수용한 근거(규정)
  - 취재팀이 재소자 및 교도소 내부를 직접 촬영할 수 있었던 허가 내역
- 184 • 부산구치소 관련
  - 교도관 재소자 폭행사건 수사결과
  - 재소자에 대한 소변검사서 히로뽕 양성반응을 나타낸 재소자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 히로뽕 반입과 투약경위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결과
  - 영남위사건 재소자와 일반재소자간의 충돌사건 조사결과
  - 부산구치소가 99. 8.31.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천장규변호사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된 동기 및 고소사건 수사결과
  - 부산교도소 재소자 필로폰 반입 및 폭행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
- 190 • 전국 검찰청 구치감의 면적과 평수
- 197 • 구치소 대용 경찰서 유치장 현황
- 199 •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보고서
- 203 •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99. 8.31)
- 204 •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안, 진척상황
- 205 • '99년 9월 현재 보호관찰과 보호감호자의 총 수
- 206 • 최근 3년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 및 현황
- 207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98년 1월-'99년 8월 현재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 208 • 소년원 현황
- 211 • 소년 교정시설과 관련하여(95년 이후 현재까지)
  - 전체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분포       - 소년범죄의 유형 및 처리결과
  - 소년원·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 수용인원
  - 소년교정시설의 운영현황 및 교육내용   - 소년교정시설내 징벌 집행현황
  - 소년교정시설내 주요 청원현황과 내용, 처리결과
  - 소년사건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비율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아동의 재범률       - 소년 형사사건 처리결과
- 219 • '99. 9월 현재 소년원 등에 배정된 전체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

의 집행실패, 의료관계인원, 의료인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

- 220 •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 공문
- 221 • 전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안사범 현황
- 222 • 교정협회 기구표 및 재직인원, 사업내역('99. 8.31 현재)
- 223 • 교정협회 기준과 운영근거 문서와 교정협회 수익금의 사용내역

###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관련

- 224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7조(찬양 고무 등), 제10조(불고지)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 현황
- 226 • 96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노조활동 관련 사법조치 현황
- 233 • 공안, 시국사범과 관련하여(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체포된 공안사범의 현황
  - 집시법,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의 처리 내역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중 조항별 적용 현황
  - 한총련 대의원 검거 현황
  -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 중 1심, 2심, 최종심 재판결과 현황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적발내역 및 관련자 처리 현황
- 241 • 지검, 지청에서 대검에 보고한 사항중 보고내용 및 대검 분석 보고서
  -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적보고
  - 학원사범 검거 실적보고
- 245 • 공안대책협의회 관련, 협의회 구성현황 및 최근 3년간 대책회의 개최 건수 및 사법처리 현황
- 250 • 97년말, 98년말, 99년 8월말기준 지검별 공안현황
  - 공안검사 인원수, 전체검사중 점유비율
  - 공안사건수, 전체사건중 점유비율
- 253 •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의 98. 3.13 특사내용 및 당시 수용교도소에서의 석방일시
- 254 • 98. 3.13 사면복권 이후 99.8.15사면까지 4차에 걸쳐 석방된 시국관련 공안사범들에 대한 자료
- 256 •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형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 현황 및 분석보고서와 위 사건에 대한 각 지검별, 내용별 분류 현황
- 259 • 89년 법 제정 이래 99년 9월까지의 보안관찰자의 총수
- 260 • 98년 준법서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사면이 거부된 인원과 현재 사면여부, 올해 사면된 인원 및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인원
- 261 •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
  - 각 송치기관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명, 인원 및 적용법률

- 송치받은 사건의 기소율

- 국정원 등에 대한 유치장 감찰실적

### 통신비밀보호법 등 감청 관련

- 265 • 98년 이후 99년 8월말까지 통신제한조치 지검별 발부현황
- 268 • 전체 긴급감청 중 감청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건수(전국 각검찰청별)
- 269 • '97. 1월부터 99. 8월 현재까지 각 지검별로 통신감청청구 및 영장발부 현황
- 274 • 각 연도별, 각 기관별 긴급감청 신청건수, 허가건수, 긴급감청의 내용분류
- 276 • 연도별, 검찰청별 불법도청 단속 현황
- 278 •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감청, 도청을 위한 영장청구건수 및 영장집행 결과 내역
- 280 • 98. 1-99.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로
  - 외국인에 대한 감청 및 정보조회(정통부를 통해 협조받은) 건수
  - PC 통신 감청 및 정보조회 건수
  - 호출기 감청 및 정보조회 건수
- 285 • '99. 9월 현재 수사장비관리규정(대검예규 제 238호, 1995. 5. 15 개정)에 의해 작성된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대장 사본
- 287 • '98-'99. 8월말 현재 감청영장 청구 건수 및 기각내역(인천, 수원, 대전, 부산, 창원, 전주지검)
- 289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검찰총장 특별지시 보도자료
- 292 • '99. 9. 현재 검찰이 운영중인 감청실 현황과 관련
  - 조직 및 인원 현황, 직급별 실명 기구표 및 발령일자
  - 보유 감청 장비의 도입 연도, 가격, 제품명, 제조회사명
  - 감청실 운영에 소요된 98년 지출예산 및 '99년도 책정예산 및 지출액
- 239 • 98년 이후 99년 8월까지 다음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행한 통신제한 조치의 [감청일지]일체의 사본(한국조폐공사/서울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인천제철/만도기계/현대정공/현대자동차/한국중공업/기아자동차/영창악기/한진중공업/강원산업)

### 영장청구 관련

- 294 •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 구속영장 청구현황
  - 영장청구기각에 대한 재청구 및 발부현황
  - 긴급체포, 영장청구 및 발부현황
- 298 • '99년 1. 1. - 8. 30. 현재 각 지검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청구비율 및 결과
- 302 •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형사사건중 구속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 303 • 98년 1월부터 99년 9월 현재까지 형사사건 기소율, 영장기각율

## 검찰제도 관련

- 304 • 검찰제도개혁 대책(99. 2. 2. 장관발표) 추진상황  
- 재정신청 확대 / 국선번호인제도 확대에 대해
- 306 • 검찰의 정원 대비 현원
- 308 • 대검찰청 및 하위청별 사건처리현황(97.9-98.8/98.9-99.8)
- 311 • 지검 무혐의 처분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현황 및 처리 경과(각 지검별 및 고검별)
- 315 • '97.1.1.-'99.8.31. 현재 형사 피의자들이 검찰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현황

## 무죄판결 관련

- 316 • 현재소 결정에 의하여 수사재기 명령된 사건현황 및 사건별 처리내역
- 324 •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기각현황, 기각사유 및 무죄 확정 판결현황
- 327 • '97년 이후 검찰 기소사건 중 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거나 수사미진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사건통계(각 지검, 지청별)
- 330 •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무죄판결에 대한 평정결과표(견해차이, 수사미진 등)
- 331 • 98.9.1부터 99.8.31.까지 형사보상금을 받은 자의 현황
- 333 • 무혐의 형사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내역

## 공무원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 334 • 공무원 직무유기 단속실적(97.1.1-99.8.31)
- 335 • 98.9월부터 88.8.31. 현재까지 음란, 퇴폐,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비호·묵인혐의로 단속된 관련 공무원 현황 및 징계처리 내역
- 337 • 부정행위로 구속된 공직자의 연도별 기소율과 일반 범죄의 연도별 기소율
- 338 •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경찰, 안기부,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 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와 이들 중 기소, 불기소 및 현재 수사중인 건수 내역
- 339 •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법무부(대검찰청 포함)에 접수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접수건수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 내용
- 340 • 인권침해 근절대책관련  
- 가혹행위, 고문 등 적발조치 현황  
- 족쇄 등 인권침해 도구사용 적발조치 현황
- 342 •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와 내용 및 결과
- 343 • 98. 9월- 99. 8월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직원의 비위사실 적발 및 징계처분 내역
- 344 • 공무원 범죄의 유형별 현황 및 처리내역

- 345 • 대검찰청 및 각급 하위청별 징계받은 검찰공무원 현황
- 346 • 사법경찰 구속사례 및 사유(97.1.1.-99.8.31)

## 재외 한국인·주한 외국인 관련

- 347 •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또는 관련 보도자료 사본
- 348 • 99.1.16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밀입국한 조선족 7명이 탈주한 사건의 경위 및 사후처리 내역
- 349 •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국적별, 연령, 성별, 입국사유, 체류기간)
- 350 • 외국인범죄와 관련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미군범죄 발생 내용별 통계 및 미군범죄 기소율, 재판결과
- 352 •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범죄 및 체불 임금 현황(98-현재)
- 354 • 불법체류자 수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 356 • 추방한 불법체류자 수와 국가별 인원
- 357 • 외국인 입국자·중국인 장기체류자 현황,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 적발 현황
- 359 • 일본 및 재외 한국인 참정권(투표권, 선거권 포함)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및 현황
- 36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많은 재외동포들을 적용 배제시킨 차별적 법률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법무부 견해와 보완대책

## 청소년 범죄와 관련

- 363 •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범죄 현황 및 대처 방안
- 367 • 각 지검별로 소년범 기소유예제도(기소유예전 교육선도제)의 전국적 실시현황과 그 결과
- 368 • 학교폭력사범과 관련하여('97.1.1.-'99.8.31)  
- 학교폭력사범 단속운영현황 및 대처방안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 학교폭력사범 사건처리현황(지검별 처리결과)
- 379 • '99년도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성과(안심이, 2828신고실적 등)

## 가정폭력방지법 관련

- 381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 및 교육내용
- 38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연도별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 내용별 결과, 임시조치 청구건수 및 청구율

기타

- 385 • 체포단계에서 국선번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이래, 체포에서부터 국선번호인을 선임한 총 건수
- 386 • 현재 긴급체포에서는 적부심 심사 규정이 없어 그 적법성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대한 법무부의 운용 방안과 이후 대책안
- 387 •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가 적부심 심사 등을 이유로 열람 혹은 등사할 수 있는 문서의 목록
- 388 •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하여 사건 관계인이 검찰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사건 통계
- 390 • '98.9.-'99.8.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책방안
- 392 •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사범 처리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범처리 현황
- 394 • 출국금지자 통계(97.1-99.8.31)
- 395 • 기소전 보석이 시행된 이래 '기소전 보석'이 실행된 건수 및 혐의 사실별 분류
- 396 • 98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보석신청과 보석(기소 후)이 허가 된 총 건수, 혐의 사실별 분류
- 3999 • 탈북자 현황과 대책 및 지원방안
- 400 • 인권옹호단체에 대한 감독 현황
- 401 • 98.1.이후 99.9.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 지검, 지청 등에 운영중인 인권상담소 운영현황 및 실적
- 403 • 98.1.부터 현재까지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과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에 의한 활동현황 및 내역

- 41. 현정부 출범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거나 신설된 제도, 각종 프로그램, 운동, 위원회 등의 현황(사회봉사명령제도, 법조일원화, 검찰 21C연구, 소년범 기소유예제도,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단, 집중감독 보호관찰 프로그램,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소년원 실업계 고등학교 신설, 재소자 면회 사전예약제, 법무부 대친절운동, 평생연구검사 제도, 민영교도소,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정보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교정행정현대화 계획 등)

=====

◦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현정부 출범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거나 신설된 제도, 각종 프로그램, 운동, 위원회 등의 현황 등 1부.



## □ 사회봉사명령제도

### ○ 의의

-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 단순한 집행유예보다 처벌효과가 크고 범죄자에게 속죄의 기회제공 및 근로정신 함양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
- 사회적으로는 무보수 봉사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범죄자 구금에 필요한 예산 절감

### ○ 연혁

- 1989. 7. 1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 시행(소년에 한해 제한적 운영)
- 1997. 1. 1 형법개정에 의해 성인에게까지 확대 시행
- 1998. 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시행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에도 적용

※ 사회봉사명령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행,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가정보호사건에만 확대·적용

### ○ 실시현황

- '89. 7. 1부터 '99. 8. 31까지 122,996명의 대상자를 접수, 그 중 118,305명을 종료하고 현재 4,691명을 집행 중
-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재범율은 3.0%로 일반형사범의 42.5%

('96년도 범죄백서), 일반보호관찰대상자의 7.8%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재범율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특히, 금년 8월경 경기북부 지역의 수해발생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435명이 복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 ○ 향후 운용방향

- 대상자의 생업과 법집행의 이원적 효과 거양을 위해 야간·휴일집행 등 탄력적 운용
- 형벌집행 및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반봉사자들이 꺼려하는 3D업종, 영세 장애시설 및 재해지역 등 시의적절한 봉사분야 지속적 발굴·지원
- 명령집행 불응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취소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

## □ 전자감시프로그램 기획단

### ○ 전자감시프로그램 의의

- 사회내 감독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가정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시간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보호관찰 유형으로 미국(1983), 영국(1995)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임

### ○ 기대효과

-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 국가예산절감 및 효과적인 재범방지
- 범죄자에게 사회내에서 가족부양을 허용, 가정해체를 방지함으로써

## 사회재통합 효과 거양

###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999. 1. 전자감시프로그램(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 EMP) 도입 연구반 구성
  - ※ 현재 법무부 차원의 기획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선진제도 연구를 위해 보호국내에 연구반 구성·운영
- 1999. 5.~10. EMP 관련 자료 수집
- 1999. 12. 미국·영국 등 외국의 EMP 운영실태 사례집 발간

### □ 집중감독보호관찰 프로그램

-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 ISP)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자, 저연령자, 정신·인격 장애자등을 대상으로 매일 학교·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접촉하고 지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인력사정상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 1주일에 1회 이상 감독하는 분류처우 기법은 활용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전자감시프로그램과 병용시 그 효과가 배가되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선행하여 감독할 인원이 확보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주 2~3회 주간 접촉, 주 2~3회 야간 접촉 등 감독의 강도를 달리하는 ISP의 시행이 어느 정도 가능함
- 한편으로 우리부에서는 인력이 확충되거나 EMP가 도입되는 경우에 병행실시할 계획도 있음

## '99년 상반기 법무부심사평가결과

법무부

## 評價綜合

- 법무부의 금년도 주요 정책과제인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와 「인권의 제도화·생활화」 등 2개 과제를 중점평가한 결과
  -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광역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의 준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
  - 노사분규 발생시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산업평화의 정착 유도
  - 인권법제정 추진과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인권 신장에 노력
  - 그러나 법집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평가한 결과
  - 주요업무계획 대부분을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등 자체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강도높은 평가활동의 수행노력은 다소 미흡
- 정부운영 혁신노력을 평가한 결과
  - 「민원행정서비스 현장」 조기제정·시행 등에 노력하였으나, 목표관리제의 시행 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主要政策課題 評價

### 法秩序 確立을 통한 社會安定 確保

#### I. 施策·事業概要

##### □ 推進背景 및 目標

- 최근의 경제난 심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라 대량실업 발생, 노사갈등 심화 등 사회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각종 민생침해사범이 증가
  - 북한 및 친북이적세력들의 국가안보 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도 증가추세
  - 최근 외국과의 교류증대로 범죄의 국제화 및 범죄인의 해외도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 마약류 범죄조직이 날로 국제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이 급증
- 이러한 불법노사분규, 민생침해사범, 좌익·폭력세력 등에 대처하여 「법의 지배」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통해 사회안정을 확보하고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主要 事業內容

○ 산업평화 구축

-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폭력파업에 적극 대처
- 노동현장에서의 「법의 지배」 원칙 확립 등
- 정리해고제도의 정착 지원
- 기업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불법분규에 엄정대처
- 노사분규 유발요인 사전제거
- 구속근로자의 최소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간첩, 친북세력사범 등 체제전복 기도 세력 척결
- 「신공안」 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로 국민인권 보장 등
-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에 단호히 대처
- 불법집회 주동자, 폭력행위자 구속수사 등 엄단

○ 국민생활의 안정확보

-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활동강화 등 광역수사체제 구축 강화
- 민생침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등을 비롯한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 강화

○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 대응

II. 推進計劃 및 實績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1. 산업평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 폭력파업에 적극대처</li> <li>- 「공안대책협의회」 활성화 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99.3~12)</li> <li>-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6대 방침」,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5대 방침」 적극시행 ('99.1~12)</li> <li>○ 정리해고제도의 정착지원</li> <li>- 기업구조조정의 불가피성 등 적극 홍보('99.1~12)</li> <li>- 기업구조조정을 부정하는 불법노동쟁의 엄단 ('99.1~12)</li> <li>- 정리해고 빙자 부당노동 행위 엄단('99.1~12)</li> <li>○ 노사분규 유발요인 사전 제거</li> <li>- 구속근로자의 최소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 행위 엄단으로 노사양측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확보('99.1~12)</li> <li>- 「불법적 노동운동관행」 탈피유도 적극시행 ('99.1~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하철노조 및 민노총 1·2차 총파업 등 불법파업·집회시위 관련 80명 구속, 564명 불구속</li> <li>○ 「공안대책협의회」 등 11회 개최하여 범정부 적인 종합대책 수립·시행</li> <li>○ 정리해고 빙자 부당 노동행위사범 4명 구속 97명 불구속</li> <li>○ 서울지하철 노조 및 민노총 1·2차 총파업 등 불법파업·집회시위 사범 80명 구속</li> <li>○ 부당해고, 상습·악의적 임금체불사범 14명 구속, 37명 불구속</li> <li>○ 「공안대책협의회」를 11회 개최,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노사분규 사전제거 노력</li> </ul>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2.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간 통일적으로 대처</li> <li>○ 간첩, 친북이적세력 등 체제전복기도 세력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첩 및 친북이적세력 엄단('99.1~12)</li> <li>-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이용한 친북이적사상 전파 차단('99.1~12)</li> <li>- 신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에 편승한 불법 대북접촉 기도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등 추진('99.1~12)</li> </ul> </li> <li>○ 「신공안」 정책의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의 신중·엄격적용('99.1~12)</li> <li>- 수사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철저준수('99.1~12)</li> <li>-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 「공안검사 세미나」 개최('99상·하반기)</li> </ul> </li> <li>○ 집단이기적 불법행동에 단호히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민원발생소지 사전 제거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99.1~12)</li> <li>- 불법폭력시위 관련자 구속수사 등 엄단('99.1~12)</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진보청년회」 조직원 6명 구속 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 161명 구속</li> <li>○ 「공안대책협의회」 11회 개최, 대책강구</li> <li>○ 한총련 이적성에 대한 홍보활동 7회</li> <li>○ 제7기 한총련 367명 (제5~6기중 76명 포함)중 147명 검거, 80명 구속</li> <li>○ 제7기 한총련 가입 대학 74개대 중 36개 탈퇴·와해</li> <li>○ 제7기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24명 검거, 1명 구속</li> <li>○ '99.3.22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시 지침시달</li> <li>○ 국가보안법 신중적용</li> <li>○ 전국화물차량 고속도로 점거사건 관련 11명 구속 등 불법 집단 행동사범 22명 구속, 112명 불구속</li> <li>○ '99민중대회 관련 폭력 시위자 3명 구속</li> <li>○ 지하철 노조파업 관련 화염병운반 학생 2명 구속</li> </ul>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3.국민생활의 안정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수사체제 구축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강력 및 민생침해 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 개최</li> </ul> </li> <li>○ 「민생치안대책협의회」 개최</li> <li>○ 조직폭력, 마약류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시행</li> <li>○ 중요강력미체사건 일소 및 기소중지자 검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4.12 전국 강력 및 민생침해사범 강력 부장검사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폭력배와의 전면전 선언</li> <li>- 강력 및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지휘 대책수립 등</li> </ul> </li> <li>○ '99.5.12 「민생치안 대책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폭력배의 동향 및 효율적 차단대책</li> <li>-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차단대책</li> <li>-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차단대책 등</li> </ul> </li> <li>○ '99.3.5 유흥업소 심야 영업 전면허용에 따른 조직폭력 등 특별단속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7개과 647명</li> <li>- 전국 408개 업소대상</li> </ul> </li> <li>○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수사력 강화</li> <li>- 마약수사직 9급 29명 임용 등</li> </ul> </li> <li>○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퇴치 국민대회 개최</li> <li>- 마약퇴치대상 시상식</li> <li>- 127신고전화 64건</li> </ul> </li> <li>○ '99년도 검찰특별관리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 기소중지자 선정 및 집중검거지시 시달 (총 302명)</li> </ul>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4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 시행</li> <li>○ 마약·폭력 등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침투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수사력 강화</li> <li>- 마약수사칙 확대</li> <li>- 장비구입</li> <li>- 전문수사반 확대설치 등</li> </ul> </li> <li>○ 범 국민적 관심제고 및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퇴치 국민대회 개최</li> <li>- 마약퇴치 대상시상식 등</li> </ul> </li> <li>○ 국내·외 공조, 협조 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퇴치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6회</li> <li>- 제41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ALCOMCO) 개최</li> <li>- 제10차 마약퇴치 확대 국제회의 개최</li> <li>- 유엔 마약위원회 참가</li> <li>- 국가 마약퇴치전략 수립·시행</li> </ul> </li> </ul>	정상추진

### III. 評價結果

#### < 總 評 >

-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여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광역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의 준동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생침해 범죄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
- 노사분규등 집단행동 발생시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법집행을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유도
  - 노사관계 안정확보로 경제개혁을 뒷받침함으로써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도 기여
- 그러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노사간 균형 있는 사법처리등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폭력등 민생침해사범, 첨단장비에 의한 음란물 확산등 풍속사범 및 농어촌등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됨

## 잘 된 점

### 1. 조직폭력배등에 의한 민생침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범죄 증가에 대처하여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광역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민생치안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 특히 최근 11,322명의 조직폭력배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이들중 일부가 10대, 20대의 신흥폭력배를 규합하거나 연계하여 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조직폭력배의 준동을 막기위해 철저히 대비

※ 조직폭력배에 대한 단속, 예방활동

- 99. 3. 5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라 준동이 예상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특별단속지시
- 99. 4.12 조직폭력배와의 전면전 선언
- 99. 4.15 간부급 조직폭력배 및 조직폭력배관련 업소명단 하달 및 이에 대한 특별관리 지시
- 99. 5.20 검찰특별관리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 기소증거자 선정 및 집중검거활동 지시

○ 퇴폐업소 및 유사 유흥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변태영업등 범죄유발업소에 대한 지속적·집중적 단속 실시로 풍속범죄 확산에 대처

### 2. 불법파업·폭력시위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신노사문화 창출

○ 구조조정 관련 불법노사분규·집단행동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전차단 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을 이끌어 냄

- '합법보장·불법필벌원칙' 수립·시행으로 노사현장에서의 법의 지배 원칙 확립('99.3)

- OECD·ILO 등 국제기구의 노동사범 처리방침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여 '불법폭력파업 관련 근로자 불구속 수사시 벌금형 적극활용'등 내용의 "노동사범처리 새방침"시행('99.4)

○ 제5~7기 한총련 사범처리 대상 대의원 등에 대한 사범처리를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한총련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각종 불법시위 참가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한총련을 사실상 와해

○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 폭력·파괴적 불법파업 엄단' 등 '산업평화 정착 6대 방침' 준수로 서울지하철 불법파업(4.19~4.26) 사태의 평화적 해결 등 노동계의 대정부 총력투쟁 진정에 기여

※ 서울지하철 파업가담자의 경우, 파업주동자와 극렬 폭력행위자 외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 및 벌금형을 적극활용하고, 징계 및 민사소송을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가개선에도 기여

## 미흡한 점

### 1. 법집행과 관련하여 국민신뢰 제고노력 필요

○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평한 법적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러나 최근 국회의 체포동의 부결에 따라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한 사례 등과 관련하여 법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이로 인하여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바, 국회동의 문제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면이 있으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향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법무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활동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을 기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및 산업평화 확립에 더욱 노력할 필요

## 2.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 미흡

-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자 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형 범죄 및 폭력사범등 각종 민생침해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범 또한 날로 흉포화, 집단화, 광역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 민생침해 범죄 증가현황 > (단속기준 : 명)

구 분	살 인	강 도	조직폭력	마약사범	성 폭 력	폭력사범
'97(1~6)	574	3,828	1,108	3,336	3,630	178,351
'98(1~6)	523	4,806	864	3,424	4,397	189,516
'99(1~6)	653	3,798	946	4,729	4,994	236,607
증가율(%)	24.8	△26.5	9.5	38.1	13.6	24.8

- 특히 최근 조직범죄단체의 미성년자 납치를 통한 범죄조직 하수인화, 이권개입·기업형 범죄조직의 유통·금융업계 진입 등 조직범죄단체에 대한 대처도 미흡
-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첨단장비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사례와 인터넷 음란물, 영상폭력물 등이 범람하여, 직장인, 일반가정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예방 활동이 요구됨

< 음란·퇴폐사범 증가현황 >

연도	인원	건 수	인 원	구속인원
'98(1~6)		8,474건	9,776명	710명
'99(1~6)		9,501건	11,282명	767명
대비(%)		12.1	15.4	8.0

- '99. 1. 16 마약류 사범 단속 및 처리에 관한 특별지시, '99. 5. 28 국가마약퇴치 전략수립 등 마약류 공급차단 및 수요감축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 최근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마약류 유통가격의 하락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마약류 암거래에 폭력조직의 개입과 국제마약조직의 국내침투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강화 필요
  - 마약수사직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 첨단과학수사 장비의 부족, 국민적 관심제고 노력 부족 등

< 농·어촌 마약류사범 확산현황 >

(단속기준 : 명)

구분 내용	'98. 1 ~ 6				'99. 1 ~ 6			
	계	대마	마약	향정신성	계	대마	마약	향정신성
총 계	3,424	604	310	2,510	4,729	754	244	3,701
농 민	87	14	64	9	136	26	77	33
어 민	5	2	0	3	8	2	3	3
소 계	92	16	64	12	144	28	80	36
비중(%)	2.7	2.6	20.6	0.5	3.0	3.7	32.8	1.0

- 또한 마약류 사범의 구속·검거와 함께 마약판매 등에 따른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마약관련 범죄의 재발·확산을 방지해야 하나 불법수익 몰수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고, 마약사범을 단순투약중심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수익 몰수사례가 없음



#### IV. 向後 改善課題

##### 1. 법집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 사회지도층 인사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노력
- 노동관련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 투명한 법집행을 고수하고 법규위반정도에 따라 노사간 균형있는 사법처리에 더욱 노력

##### 2.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 각종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한 적극대처 방안 마련
- 인터넷 등을 통한 풍속사범 등 최신 발생 범죄유형을 분석·단속하고 예방책 마련
- 조직폭력범죄 개념을 조직범죄 일반으로 확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마약류 확산추세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 마약거래에 따른 불법수익 몰수방안 마련·시행

### 人權의 制度化·生活化

#### I. 施策·事業概要

##### □ 推進背景 및 目標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의 기본 철학에 따라 법무부는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의 구현'을 법무행정지표로 설정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추진
  -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필요
- 국익위해자 또는 수사대상자의 해외도피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출국금지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출국금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
- 경제적 빈곤 또는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여 법률구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도모
-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선진교정처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유도

□ 主要 事業內容

- 인권법제정·국민인권위원회 설립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철저
  - 불구속수사 확대
  - 수사시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제반지시의 지속적 이행
  - 자체 감찰활동 강화
  - 구속장소 감찰활동 강화
  -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사례 철저수사
  - 국내외 홍보 철저
- 재정신청 확대 추진
  - 재정신청확대방안 및 문제점 검토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심의 및 개정안 마련
- 출국금지제도의 엄격한 운용
  - 출국금지기준 조정
  - 출국금지결정 절차 개선
  - 출국금지 관련 근거 법령정비로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부령) 개정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향상
  - 형사법률구조 대상범위를 기소전의 구속사건에까지 확대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
  - 공익법무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활용
- 재소자 수용환경 개선대책 강구
  - 민영교도소 제도의 도입 추진
  - 행형법 개정
  -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추진
  - 부부 만남의 집 설치·운영
  - 선진 교정제도의 도입

II. 推進計劃 및 實績

세 부 사 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추진상황
1. 인권법제정,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년 하반기까지 인권법 국회통과</li> <li>○ '99년 하반기까지 국민인권위원회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3.30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li> <li>○ '99.4.7 법안 국회제출 (법사위에서 심의중)</li> <li>○ 인권법 국회통과 즉시 인권위원회 설립작업 착수예정</li> </ul>	정상추진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구속수사 원칙확립</li> <li>- 불구속수사에 관한 지시 철저이행('96.1.5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지시」, '97.12.24, 「경제난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중 불구속 수사지시, '98.11.20, 「불구속수사 확대 등에 관한지시」)</li> <li>○ 경찰서 유치장 등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li> <li>- 자체구속장소가 있는 수사관서에 대하여 월1회 이상 감찰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점유율 '98(1~6) 6.5% '99(1~6) 4.5%</li> <li>○ 총236개 기관, 1,395회 실시('99.1~6)</li> </ul>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감청 근절을 통한 인권보장 철저</li> <li>- 교육 및 사후감사를 통한 감청남용 방지</li> <li>- 감청사후 엄격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보고를 받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감청억제</li> <li>- '99.5현재 전년대비 감청청구 및 발부 건수 각 약 33% 감소</li> </ul>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수사 체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정보은행 설치</li> <li>- 법의검시관제 개선</li> <li>- 마약지문감정기법 개발 (2차년도)</li> <li>- 첨단감정·감식장비 및 수사장비 구매보급</li> <li>- 과학수사자문협의회 운영활성화</li> <li>- 감정·감식능력 제고</li> <li>- 해외연수 및 감정요원훈련</li> <li>- 감정·감식의 신뢰성 확보</li> <li>- 과학수사교육 실시</li> <li>- 과학수사세미나 개최</li> <li>- 지도점검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 서울지검 및 부산지검에 공중보건의 2명 배치</li> <li>- 마약지문감정기법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연구용역 추진중</li> <li>- 탠덤질량분석기 등 8종 9점 구매추진중(외자)</li> <li>- 6.17입찰(조달청)</li> <li>- 3.1~6.30 거짓말 탐지기 검사지도점검 실시</li> <li>- 4.22 4종의 4중유전자 좌감식기법 개발 국내수사기관 최초로 특허출원</li> </ul>	
3.재정신청 확대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신청 확대방안 및 문제점 검토('98.1~6)</li> <li>○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확대방안 수립 ('98.7~12)</li> <li>○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회 심의, 학계·법조계 등 의견수렴 ('99.1~6)</li> <li>○ 법률개정안 마련('99.6~9)</li> <li>○ 정기국회 법률안 제출 ('99.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신청 확대방안 및 문제점 검토('98.1~6)</li> <li>○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학계·법조계 등 의견수렴('99.1~6)</li> <li>※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위 재정신청 확대방안연구 검토 중에 있음</li> </ul>	정상추진
4.출국금지 제도의 엄격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금지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1월부터 조정된 출국금지 기준에 의해 출국금지 처분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금지기준 조정('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관세·벌금미납자·금융손실 초래자에 대한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출국금지처분</li> <li>- 병역의무자의 부모·보증인,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금지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금지결정관련 위임전결규정 상향조정</li> <li>- 출국금지실무위원회 설치</li> </ul> </li> <li>○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금지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위임전결규정 개정('99.1)</li> <li>-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근거규정 신설('99.3)</li> <li>- 출국금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 제정('99.4)</li> </ul> </li> <li>○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개정('99.3 법무부령)</li> </ul>	
5.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법률구조 대상범위 확대</li> <li>○ 공익법무관의 국선변호인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99.4)</li> <li>○ 공포·시행('99.7)</li> <li>○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안 마련('99.5)</li> <li>○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승인('99.6)</li> </ul>	정상추진
6.재소자 수용 환경개선 대책 강구 (1)민영교도소 제도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li> <li>○ 법률안 '99 정기국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개최('98.11.27) 및 교정관계법 심의회 위원회 구성('99.1.29), 각계 의견수렴</li> <li>○ 법률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li> </ul>	정상추진
(2)행형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형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법률안 '99하반기 국회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개최 및 교정관계법 심의회위원회를 구성, 각계의견 수렴('99.1월)</li> <li>○ 행형법 개정안 입법예고('99.5.29)</li> </ul>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황
(3)미결수용자 사복착용 허용	○시행지침 수립 ○4월부터 5개기관 시범 운영 ○하반기 전 교정기관 확대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제정 ('99.3.17) ○서울구치소 등 5개 기관 시범운영 ('99.4) ○'99.6.1부터 전교정기관 확대 실시	
(4)부부만남의 집 설치 운영	○부부만남의 집 운영지침 수립 및 시설설치  ○지방교정청별 1개기관 시범운영	○부부만남의 집 설치 운영계획 수립('99.3.2) ○부부만남의 집 운영 지침제정 시달('99.5.25)  ○'99.6.29부터 안양, 대전, 대구, 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 운영	
(5)무계호 외부통근 작업 실시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시행지침 수립  ○'99.6월부터 지방교정청별 1개 기관 지정운영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실시계획 수립('99.2.26)  ○과실범, 개방처우대상자 등 시범시행('99.3.15) : 수원교도소 등 6개 기관 167명	
(6)수형자 외출·외박제도 도입	○귀휴시행규칙 개정 - 외출·외박조항 신설  ○'99.6월부터 시행	○귀휴시행규칙 개정 ('99.6.29) - 외출·외박 근거조항 신설  ○수형자 외출·외박시행 지침 제정('99.7.2)	

### III. 評價結果

#### < 總 評 >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관련 제도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기여
  - 국내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추진
  - 불구속 수사원칙의 이행을 통해 구속인원과 구속점유율을 줄이고 미결수의 사복착용허용, 부부 만남의 집 개설등 교정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출국금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청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 그러나 아직도 인권보호가 일부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철야수사 등이 시행되고 있고, 체포·구속장소 감찰활동도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등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미흡
  -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인권 개선상황에 대한 대외홍보의 강화도 필요

**잘 된 점**

**1. 인권법 제정추진**

-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나름대로 국제기준과 여론에 충실한 인권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99.4.7)함으로써 국내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
  - 일부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재야단체 등을 상대로 설득 및 홍보병행 실시

**2.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교정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98.11.20 행정법규 위반·과실범 등에 대한 원칙적 불구속 수사 등 불구속수사 확대지시 등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범죄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속인원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고 구속점유율도 감소하는 등 인권신장

**< 구 속 현 황 >**

(단위 : 명, %)

구 분	범죄발생	구 속 자	구속 점유율
'98(1~6)	1,028,316	66,449	6.5
'99(1~6)	1,172,749	52,894	4.5
증감율(%)	14.0	△20.4	△30.8

- 미결 수용자에 대한 사복착용 허용, 부부만남의 집 설치·운영,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실시, 수형자 외출·외박제 도입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교정국장의 교정직 임용을 통해 교정업무전문화도 추진

**3. 감청제도 및 출국금지제도의 개선**

- 감청관련 규정의 엄격준수를 통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두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감 청 영장청구 및 발부건수 감소

**< 감청청구 및 발부현황 >**

연도별 구분	청 구 건 수	발 부 건 수	대 비(%)
'97(1~5)	1,299	1,282	
'98(1~5)	1,351	1,335	+4.0/+4.1
'99(1~5)	902	884	-33.2/-33.8

- 지난 10여년간 시행되고 있던 출국금지기준('89.1 제정)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99.1)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 신중하고 공정한 출국금지 결정을 위해 출국금지 결정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99.1)하고 “출국금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필요시 자문을 받는 등 출국금지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출국금지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98. 10월말 2,641명에 이르던 출국금지자 수가 '99. 6월말에는 1,648명으로 감소하였고, 출국금지 관련 이의신청 건수도 '98년에는 월평균 5.4건에서 '99년에는 월평균 3.3건으로 감소

## 미흡한 점

###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다소 미흡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잠안재우기 수사관행이 근절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철야수사가 시행되고 있고, 피의자 등 수사대상자가 보도진에게 과잉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인권보호에 미흡한 면이 상존

○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실적이 다소 부진하며, 감찰내용도 형식적 실적위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미흡

※ 경찰서 유치장 등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활동('99.1~6) : 목표 1,416회, 실적 1,395회

※ 야간·집중 감찰활동('99.1~6) : 131회

- 경찰·검찰 등에서 수사지연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구속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노력과 함께 이를 감찰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구속수사만이 처벌이고 불구속 수사는 처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홍보 노력 필요

### 2. 교정환경개선 노력 필요

○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대등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등에 따른 생계형 범죄 증가 및 투자미흡 등으로 교도소 과밀화 발생

-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 분류수용 곤란으로 인한 범죄 감염 우려 등 문제발생

< 교도소 과밀수용 현황('99.6.30) >

적정수용인원	실제수용인원
58,000명	69,102(119%)

○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을 위해 필요한 사복 및 사복보관함, 옷걸이, 옷커버등 장비를 예산부족으로 일부 민간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확보하는 사례 발생

- 또한 사복착용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사용실적이 저조

○ 한편, 사형수를 같은 미결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 수용자와 혼거수용함에 따라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

### 3. 국내 인권 개선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홍보 필요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내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타부처와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추진 필요

□ 정보화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 대검찰청 1차 정보화근로사업 현황

- 사업명 : 검찰 종합자료관리검색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98. 12. - '99. 5. (6개월간)
- 고용인원 : 370명/일 (년 인원 37,000명)
- 입력자료량 : 수사참고자료 등 45만면 계획에 약 60만면 입력완료
- 소요예산 : 20억원(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 인건비 : 12억원 (60%)
  - 장비도입 및 기타 : 8억원(40%)

○ 대검찰청 2차 정보화근로사업 현황

- 사업명 : 법무·검찰 종합자료관리검색시스템 구축 중
- 사업기간 : '99. 5. - 2000. 1. (9개월간)
  - 자료입력 기간 : '99. 5. - '99. 12.(8개월간)
- 고용인원 : 420명/일 (년 인원 84,840명)
- 입력자료량 : 기획·연구자료 등 70만면 계획에 현재 60만면 입력
- 소요예산 : 48억 6,000만원(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 인건비 : 31억원 (65%)
  - 장비도입 및 기타 : 17억 6,000만원(35%)

7. 남녀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인권법안 등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차이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인권법안과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의 개념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법안과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으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를 성희롱 개념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그 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음
- 성희롱의 처리에 관하여도 인권법안과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이 있는 경우에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조사한 후 당사자의 화해나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성희롱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를 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처럼 각 법률이 성희롱의 개념을 다소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성희롱에 대한 처리방식 또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서로 달리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개념과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음

6.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혁안

	현행제도	위원회안	법무부 의견
1. 긴급체포	긴급체포후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구속영장 청구, 단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가능한 한 지체없이 영장청구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
2. 구속기간	경찰구속기간 10일, 검찰구속기간 10일	경찰구속기간 5일로 단축, 경찰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 연장기간만큼 검찰의 구속기간 단축	-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검찰 구속기간 축소는 부당 - 경찰이 10일의 구속기간을 갖는 입법례가 없음
3. 피의자의 보석청구권	구속적부심 신청시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여부 판단	구속적부심과 별도의 피의자의 보석청구권 인정	- 불구속 수사·재판을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석청구권 인정에 찬성
4. 석방제도 통합운동	규정없음, 다만 구속적부심신청시 적부심 기각할 경우에 보석을 직권으로 판단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청구에 의해 보석,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의 사유를 전부 일괄적으로 판단	- 국민 편의면에서 바람직
5.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외사유의 범위가 넓음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제외사유 규정을 축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	-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축소 신중검토
6.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	없음	도입	- 도입에 찬성
7. 수사시 변호인 참여권	규정없으나 실무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인정, 다만 변호인참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되, 초동수사단계에서는 참여권을 배제하는 등 수사에 장애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8.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의 통지제도	없음	도입	- 도입에 찬성
9. 인신보호법	없음	제정	-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인신보호법 제정에 찬성하나, 실태조사 등 신중 추진이 바람직



	현행제도	위원회안	법무부 의견
10. 재정신청 범위	형법 제123조~125조의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 등에 한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	- 범위 확대에는 찬성 - 여타 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항고 및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함이 상당
11. 양형합리화	대법원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 연구·검토	법원조직법에 외부인사가 참여한 양형조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두고, 표준양형 기준을 마련, 다만 표준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아니함	- 객관적 양형기준 마련에 찬성 - 실질적 구속력 확보를 위하여 양형기준일탈시 이유설시의무 등 규정 필요
12. 즉결심판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하고, 구류·벌금 등 선고 가능	경미한 범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리 구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하여서만 처벌하도록 개선	- 인권보호 측면에서 즉심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나, 즉시폐지는 불가능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장기추진과제로서 시군경찰·법원의 설치 등 즉심대상 범죄처리를 위한 체제정비 필요
13. 행형제도		○ 교정시설의 현대화, 소규모화 추진, 교도소 내에서의 직업 훈련 강화 ○ 가석방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기호품 제한 등 금지 위주의 교정정책 재고하여 교정비리 근절	-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시범실시중임 - 교정 관련 인적·물적 시설 확충과 예산지원이 절실함
14. 보안처분	○ 보호감호청구요건: 2회 이상 실형으로 형기 합계 3년이상 ○ 보호감호집행기간: 7년 (1년마다 심사하여 가 출소)	○ 보호감호청구요건 : 3회이상 실형으로 형기합계 4년 이상 ○ 보호감호집행기간 : 선고된 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권 강화, 내실있는 재사회화를 위한 법무부의 관련법 개정 의견이 반영된 것임
15. 신속·공정한 재판	○ 필요적 변론(당사자의 법정 출석의무) ○ 변론준비절차에 당사자 협조의무 없음 : 변론기일의 수회 속행으로 절차 지연	○ 무변론판결제도 도입(자백사건의 경우 법정 출석 불필요) ○ 변론준비절차 강화 : 준비절차에 협조의무 부과하고, 변론기일은 가급적 1회로 종료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바람직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현행제도	위원회안	법무부 의견
	○ 법정화해시 당사자 쌍방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함 ○ 변론종결 2~3주 후 판결원본에 의해 판결 선고	○ 서면에 의한 화해제도 도입 :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해 가능 ○ 변론 종결과 동시에 판결원본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16. 민사집행절차의 개선	○ 채무자 스스로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재산명시제도 외에 채무자의 재산추적방법이 없음 ○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아무 이유 기재없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경매이해관계인의 송달장소가 외국일 경우 송달에만 수개월 소요됨 ○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아무 부담없이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 지연	○ 재산조회제도 도입 : 공적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경매절차에서 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유 없는 항고를 제한함 ○ 외국송달 특례제도 도입 : 국내 송달장소 신고를 의무화 ○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여 절차지연 목적의 항고 방지	- 민사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집행절차 지연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
17.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 강화	개별규정 없음 없음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 신설 법률서비스 전달체계(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화	- 찬성함 - 찬성함
	변협의 법률구조활동과 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 제도가 있음	다양한 현행 구조제도를 통합 확대하여 공익변호인단 구성	- 찬성함
18. 국선변호제도	필요적 사건의 범위: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필요적 변호사건을 1차 : 모든 구속피고인 2차 : 체포, 구속된 피의자 3차 : 단기 1년 이상의 불구속 피고인으로 순차 확대	- 국선변호의 단계적 확대에 찬성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의 현실화, 변호인의 충분한 확보등 여건충족 필요

6. 현재 추진중인 인권법, 부패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및 관련보도자료 사본일체, 특히 UN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현재 추진중인 인권법, 부패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및 관련보도자료, UN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인권법, 부패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UN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b>법무부 보도자료</b> 1998. 12. 8(화)	자료문의 담당부서	부서명	인권과
		전화번호	503-7045
		주책임자	인권과장
		담당자	권성등검사
		공보관실	503-7011~2 FAX:504-5723
제목 : 『인권법』 수정안의 주요 요지 및 쟁점검토			
<input type="checkbox"/> 법무부 광무근 인권과장은 국회인권포럼이 '98. 12. 8(화) 14:00 ~17:00,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인권위원회 설치방향”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인권법』 수정안의 주요 요지를 발표하였음			
<input type="checkbox"/> 광무근 인권과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권법 시안중 수정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한 부분</li> <li>○ 신설·추가한 부분</li> <li>○ 변경한 부분</li> </ul>			
2.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li> <li>○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li> <li>○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li> </ul>			
<input type="checkbox"/>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99 국감(법제사법위) 37			

# I. 人權法 試案중 修正한 內容

## □ 削除한 部分

1. 이사회제도(시안 제23조 ~ 제25조)의 폐지
  - 시안의 이사회는 관계부처 차관 4인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산임이사로 구성
  - 정부가 이사회를 통해 인권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는 오해가 있음을 고려하고
    - 인권위의 운영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폐지
2.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시안 제16조 제4항)의 삭제
  - 인권위는 순수한 민간법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의 특수법인인 점 고려
    - 주무관청의 감독규정 적용배제를 위해 삭제
3. 정관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권(시안 제18조 제2항)의 폐지
  - 법무부장관이 인가권을 가질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한다는 의견 반영
    - 정관변경시 법무부에 사후 통보
4. 감사제도(시안 제26조)의 폐지
  - 시안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규정
  - 인권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폐지(인권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감사관 선임하는 방안 고려)
5. 인권단체 등록·국고지원 규정(시안 제62조 ~ 제64조, 제66조)의 삭제
  - 인권단체를 국고지원할 경우 관변단체화되어 순수성을 해한다는 의견 반영

6. 기부금 수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조항(시안 제68조 제2항)의 삭제

- 법무부장관의 인권위 활동에 대한 관여 배제

7. 적용범위(시안 제8조)의 삭제

- 시안의 적용범위는 인권위의 조사기능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인권위는 교육·홍보 및 정책권고등 광범위한 기능이 있음을 고려

## □ 新設·追加한 部分

- (1) 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확대(시안 제9조)

- 시안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인권침해행위중 차별행위 일반을 규정
-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 유형 추가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추가
  - 법관의 영장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등 불법으로 압수·수색하는 행위 추가
- 수사기관등 이외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 추가
  - 위원회 의결(인권위원 2/3 찬성)로 조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확대가능

- (2) 차별사유에 “정치적 견해” 추가(시안 제11조)

- 차별사유를 14가지에서 15가지로 확대
- \* UN인권 B규약, 공추위안 등 참고

(3) 인권위원회 업무 내용 추가(시안 제19조)

- ① 인권 교육 및 홍보
- ② 인권관련 법령(제안된 법령안 포함)·제도·정책등의 연구와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③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일반에 대한 조사와 구제
- ④ 필요한 경우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⑥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인권에 관한 연구와 자문
- ⑦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 ⑧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⑨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추가부분 : ⑤ ~ ⑨

\* 이기문 의원안, 공추위안 및 외국 입법례 참고

(4) 임시구제조치 권고 신설

- 인권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임시구제조치 권고 가능

\* UN 권고안, 이기문 의원안 및 공추위안 참고

※ 인권위의 임시구제조치를 명령권으로 할 경우 해당자의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임시구제가 지연됨

(5) 인권위원 등의 대우규정 신설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차관급의 예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

(6) 연례보고서 등의 제출기관으로 대통령 외에 국회 추가 (시안 제21조)

- 연례보고서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서도 제출 가능

\* 이기문 의원안, 공추위안 및 외국 입법례 참고

(7) 법률구조 신설

- 조정 불성립시 법률구조공단 기타 기관에 구조요청

□ 變更한 부분

1. 제2장의 명칭 변경

- 시안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 수정안 :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 시안과 같이 할 경우 마치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줄 수 있음

2.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방법(시안 제27조)

- 시안 : 이사회(이사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
- 수정안
  - 제1안 : 법무부장관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단, 법조계·여성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로 인권위원 임명토록 규정)
  - 제2안 :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단,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 참고사항 >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경우 인권위원을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하고,
- 영국은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3. 인권위원의 임기(시안 제27조제6항)

- 시안 : 2년, 1차 연임
- 수정안 : 3년, 1차 연임(단, 동시에 전원교체되지 않도록 최초 인권위원중 절반의 임기는 2년)

4. 상임위원 및 소위원회 확대(시안 제31조)

- 시안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3명
  - 소위 2개
- 수정안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4명
  - 소위 3개

5. 조사의 한계 축소(시안 제46조)

- 시안에 있는 자료제출거부사유중 “법령에 의한 공무상의 비밀”, “사건관계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삭제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강화
  - \* 공추위,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등 의견 반영

6. 출연금에 대한 법무부의 예산심사권 배제(시안 제66조, 제69조)

- 위원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대한 법무부의 조정 불가, 예산청에 의견 제시만 가능

- 인권위의 재정상의 독립성 보장, 사실상 예산 회계법상의 독립기관화

※ 다만,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은 반대하고 있음

7. 필요적 이송사유를 각하사유로 변경(시안 제47조)

- 시안 : 인권위가 진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재판중인 경우 필요적 이송사유로 규정
- 수정안 : 수사, 재판 외에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감사원의 감사,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
  - 각하사유 소멸시 재 진정가능

8. 지방사무소 설치 근거규정 변경(시안 제17조)

- 설치근거를 정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 II. 主要 爭點에 관한 檢討

### □ 人權委를 國家機構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 ①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정부로부터 실질적 거리를 두면서 정부의 인권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감시·보충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보충적 성격에 어긋남. 인권위는 수사, 재판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되어서는 곤란함

※ 사법제도는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 구조이다. 국내인권기구는 그 권한이 아무리 광범위하고 이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적절하게 기능하는 사법제도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내인권기구가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은 부수적인 보장수단 (additional measure of security)으로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메카니즘 (complementary mechanism) 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219, 220)

※ 새로운 국내인권기구는 기존의 기관들과 경합 (compete)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 (complement) 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 . . . 국내인권기구는 적절하게 기능하는 사법제도를 보충할 수 있을 뿐이고 결코 대체 (replace)할 수는 없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91, 92)

※ 많은 인권위원들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의 허점 (shortcomings)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국가가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 (monitor)하고 필요한 경우 그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51)

②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국가기구로 하여 인권위원을 전원 상임으로 하고 시정명령권등을 부여할 경우 장관급 1인, 차관급 9인등 고위직과 500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는 주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조사·시정하는 기능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414명의 직원이 있음 (인권위는 그 업무범위와 조사대상이 공정거래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총정원령"(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은 동결되고 매 3년마다 감축하여야 하는데,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③ 국가기구로 하면 인권침해 조사와 인권관련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여성특위」, 「국민고충처리위」 및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 「노동위원회」 등과, 인권교육·홍보에 관하여는 「교육부」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국가기관간의 기능혼선과 갈등 야기

- 독립적 특수법인으로 해야 정부밖에서 인권관련 전기판에 대해 민간 감시 가능

※ 국내인권기구의 목적은 다른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또는 수행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내인권기구는 기존의 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91)

④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도 인권위에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 (separate and distinct legal personality)" 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며, UN으로부터 모범적인 인권위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南阿共등의 인권위도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특수법인체임

※ 국내인권기구 설치근거법은 그 기구의 법적 독립성, 특히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인권기구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70)

※ 국내인권기구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를 개발하려는 국가적 노력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298, 299)

- ⑤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 산하의 정부기구가 되고 관료화되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기 곤란함. 또한 민간부문과의 親和力과 연대가능성 및 일반시민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기구 보다는 특수법인 형태가 더 유리함.

※ 국내인권기구는 인권증진과 보호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정부기구(NGO) 및 지역단체와 밀접한 접촉(close contact)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러한 기구의 협조는 일반인들에게 국내인권기구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국내인권기구의 인식가능성(visibility)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 . . . . 두번째 이유는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직접 진정을 하거나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관료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종종 꺼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비정부기구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국내인권기구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 . . 셋째, 비정부기구는 더 큰 운영상의 유연성으로 인해 종종 국내인권기구에게 사회적인 변화 및 기타 다른 변화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국내 인권상황, 구조적 또는 입법적 부적절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108~110)

- ⑥ 인권시민단체에서 능력이 인정된 인권지도자나 인권운동 실무

가들이 인권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도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하여야 함. 만일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면 정부내 기구가 되어 國家公務員法の 적용을 받게 됨. 즉 인권지도자들이 인권위에 들어오려면 공무원신분을 취득해야 함. 그러나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직원 선발권을 보유하므로 유연성있게 결정할 수 있음.(현행 국가공무원법상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6급이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함)

※ 직원 개개인의 능력, 대표성 및 공정성은 국내인권기구의 대외적 이미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인권기구에는 그 자체 직원을 모집할 권한이 주어져야만 한다.(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126)

□ 人權委에 強制搜查權을 주지는 의견에 대한 검토

- ① 이 주장은 인권위를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으로서 인권위의 보충적 성격에 위배되는 잘못된 발상임
- 인권침해방지, 즉 국민의 권리보호는 법원과 검찰·경찰의 기본기능이고, 인권위는 이러한 정부기능을 감시·보충하는 제도임(앞의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219, 220, 91, 92등 참조)
  - 인권위의 조사는 직접 기소 또는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 조사후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뢰,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조사협조 거부시 제재수단(과태료 1,000만원이하)을 통하여 당사자 출석, 자료제출 등을 간접강제 할 수 있음

- ②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영장 신청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헌법 제12조 제3항)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 ③ 인권위 소속 검사를 두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인권위 검사가 검찰청법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검찰(일종의 특별검사)이 되므로 인권위가 검찰권을 대행하는 수사기관이 되어 권력기관화 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또다른 민간기구(제2의 인권위)가 필요하게 되는 등 채택하기 어려움

□ 人權委에 是正命令權을 주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 ① 시정명령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 「노동위」가 있으나 이들 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업무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등에 관하여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임  
그러나,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가진다면 이는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대행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재판기구화함의 의미하며 정부조직체계상으로도 맞지 아니함(앞의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219, 220, 91, 92등 참조)
- ② 인권위에 권고권을 줄 경우에는 1회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나, 구속력있는 명령권을 줄 경우에는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피해구제가 장기화되므로 간이·신속한 구제라는 인권위 본래의 구제방식에 맞지 않음
- ③ 일부에서는 권고를 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만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나, 인권위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인권

침해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므로 국가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外國의 시행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음

- ④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外國의 인권위도 권고권만을 갖고 있으며 구속력 있는 명령권(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는 外國 인권위는 거의 없음

※ 인권위가 진정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결과를 강제하는 것은 혼치 않다. . . . . .

많은 점에서 옴부즈만의 권한은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인권위 권한과 매우 유사하다. 두 기구는 모두 개인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어느기구도 구속력있는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문단 50, 62) ☑



#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비판, 과연 옳은가?

1999. 4. 19.

## 법 무 부

## 목 차

- I.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국가의 기능과 인권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연유 ..... 1
- II. 인권법안은 최소한의 민주절차도 외면한 밀실타협의 산물인가 ..... 4
- III. 구체적 주장에 대한 반박 ..... 6
  - 1. 정부 인권법안의 인권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6
  - 2. 법무부는 인권위의 상부기관으로서 권고등의 통보절차를 통하여 인권위를 감사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9
  - 3. 인권위의 설립과정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에 위임되어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10
  - 4. 인권위의 관할범위를 한정하여 기본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 11
  - 5. 조사대상기관의 조사거부 사태로 인하여 인권위 활동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것인가 ..... 14
  - 6. 인권위의 결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 17
- IV. 맺음말 ..... 20

##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비판, 과연 옳은가?

'99. 4. 19

법무부

1999. 3. 30.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공추위」는 3. 31.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성명과 그 부속문서의 내용은 국가기능의 본질과 인권위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 I.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국가의 기능과 인권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연유

-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를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기구로 만들어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기능의 본질」과 「인권위의 성격」에 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적 임무에 속한다. 이는 인권침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살인죄에,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법체포·감금죄에,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인권침해행위는 곧 실정법상 범죄 행위이다.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수사하며 이를 소추

하여 처벌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구제를 하기 위하여 경찰·검찰·법원을 두고 있고, 입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즉, 국가의 사법제도 전반이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법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N의 「국내인권기구설립권고안」을 보면,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보장에 '틈새', '허점(shortcomings)'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인권위를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대체」(replace)하거나 국가기관과 「경합」(compete)해서는 안되고 오직 국가기관을 「보충」(complement)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이 '수사기관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기관에서 다루지 못하는 '차별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UN으로부터 모범적 인권위로 평가받는 「뉴질랜드」, 「캐나다」의 인권위는 차별행위만을 다루고 「호주」는 차별행위와 정치적·시민적권리의 침해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시정권고권」을 가질 뿐 「시정명령권」과 같은 재판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일부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법기구는 져혀놓고 모든 인권침해조사·구제의 책임을 인권위가 갖겠다는 것으로서 국가기능의 본질과 인권위의

성격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일부 인권단체 주장과 같이, 인권위가 개인간의 인권침해범죄까지 조사한다면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경찰, 검찰과 기능 중복이 되며 방대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취소나 위헌확인만 하지 적극적 시정명령은 못하는데, 인권위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는 물론 정부의 모든기관에 대해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수사기능과 재판기능을 함께 갖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력기구를 만들어 정부를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그 경우 인권위의 권력남용은 누가 감시·방지하겠는가? 민간감시를 위한 「또 하나의 인권위」가 필요할 것이다.

- 세계 모든 나라가 법무부를 정부의 인권보장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에 대한 수사과 그 지휘 및 소추에 관하여 법무부가 그 주무기관이며 정부 내의 입법과 법해석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내에서 법원과 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제30조제1항)도 법무부를 인권옹호의 주무부서로 규정하고 있다.

「공추위」 소속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인권옹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권위에 맡기고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보호가 국가의 기본적 임무임을 망각한 논리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인권위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40여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나라들은 기존의 국가기구만으로 인권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가 설치된 나라도 UN의 권고안과 같이 인권위를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완하는 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II. 인권법안은 최소한의 민주절차도 외면한 밀실타협의 산물인가

- 법무부는 인권법안이 확정되기까지 장장 10개월 동안 국민적 토론을 거쳐 인권법안을 성안하였다. 즉, 그동안 인권단체 등과의 심도있는, 때로는 격렬한 토론회 20여회, 공청회 4회를 비롯하여 수십회에 걸친 신문·방송의 보도와 비평, 6차에 걸친 당정협의 등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 그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98. 5. 21. KNCC 주최 국가인권위 토론회 참석
- 2) 98. 6. 23.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국가인권기구 토론회 참석
- 3) 98. 6. 24. AI(Amnesty International) 동아시아 담당관 등과 인권위 설치기준 의견교환

- 4) 98. 9. 25. 인권법 시안발표
- 5) 98. 10. 1. 입법예고(관보게재)
- 6) 98. 10. 2. ~ 11. 14. 정책기획위 주관 토론회 참가(5회)
- 7) 98. 10. 16. ~ 12. 8. 법무부·정책기획위 공동주최 공청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민간단체공추위, 국회 인권포럼 주최 각 공청회 참가(4회)
- 8) 98. 10. 17. ~ 12. 15. KBS TV의 「심야토론」, KBS 및 CBS 라디오, 인천방송(ITV), K-TV, 한겨레신문 등에서 공개토론
- 9) 98. 10. ~ 99. 3. 국내 10개 일간지의 사설게재, 논평과 방송보도 등 인권위 관련보도와 비평 수 십회
- 10) 98. 9. 18. ~ 11. 16. 법무부장관의 인권단체 대표 등과의 토론·의견교환(6회)
- 11) 98. 9. 24. ~ 99. 3. 22. 당정협의(6회)
  - 6회에 걸친 당정협의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인권단체들과의 협의과정이었음. 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인권단체의 주장을 계속 대변해왔기 때문임. 인권단체들은 매 당정협의 때마다 그때 그때 협의내용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음.
- 12)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인권법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UN인권고등판무관실의 관계자와 권위있는 외국의 인권 지도자에게 국제적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음.

□ 과연 어느 법이 이 정도의 논의과정을 거친 일이 있었는가. 인권단체들이 인권법에 관한 토론요청을 할 때 법무부에서 거부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인권법안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외면한 채 만들어진 밀실타협의 산물이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짜깁기된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III. 구체적 주장에 대한 반박

#### 1. 정부 인권법안의 인권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의 인권법안이 인권위를 민간기구로 한 것은 집권자,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간감시」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침해가 어디서 왔는가? 「의문사사건」에서 보듯 집권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인권단체들의 주장대로 인권위를 공무원으로 구성할 경우, 「진정한 독립성」은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권위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기구로 할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인권위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공무원을 감축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속에서 굳이 엄청난 공무원과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국가기구를 고집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만델라」대통령이후 남아공의 인권위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수하르토」 당시 인도네시아 인권위는 어용기구화한 케이스로 UN인권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현 대통령께서 인권지도자이므로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상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 대통령의 임기 종료후에도 존속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과 제도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에서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시의(猜疑)」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 있다. 이것이 영구히 존속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자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 인권위에 「법인격」을 부여했다고 해서 법무부 산하기관이라고 한다. 어이없는 주장이다.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가 독자적인 권리주체가 되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소송도 하고 기부를 받아 기금등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를 정부와 분리·독립시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라는 것은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에서도 권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권위의 운영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뉴질랜드,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모두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인」이라고 하면 언뜻 「회사」나 정부의 각 부처 산하 「공법인」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위는 법무부 산하 공법인이 아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어떠한 지시·감독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인권법안은 주무부서가 인권위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그 업무의 독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12조제1항).

- 인권위의 구성을 보면, 9인의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추천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인권위 직원도 인권위원장이 임면토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인권 주무부서장인 법무부장관이 직접 인권위원을 임명하기도 하고(영국), 인권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이와 같이 정부의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외국의 예에 비추어 지나치게 법무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예산에 있어서도, 인권위가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법무부장관이 예산당국에 제출하되 법무부는 이를 조정하거나 의견제시 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위의 구성과 업무, 인사, 예산의 모든 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장치를 두었는데, 도대체 인권법안의 어떤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 2. 법무부는 인권위의 상부기관으로서 권고 등의 통보절차를 통하여 인권위를 감사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무부는 인권위의 상부기관도 아니고 감사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 내에서 엄연히 인권옹호의 주무부서다. 인권 주무부서는 당연히 국내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직무수행이 부당하다는 것은 곧 정부의 인권보호기능을 폐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권 주무부서에서는 인권감시·보충기구인 인권위의 활동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인권위의 중요한 활동결과를 사후 통보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수행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인권위의 주요활동내용을 인권주무부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파악하라는 것밖에 안된다.

또한 법무부의 인권법안은 인권위로 하여금 그 권고와 의견의 내용을 법무부에 사후통보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하여 법무부와 협의하거나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통하여 법무부가 인권위의 활동을 감사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도 인권위가 인권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권고 등과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UN권고안에서도 인권위가 기존 사법제도의 대체기구가 아닌 보충기구임을 전제로, 인권위와 국가간의 연계를 예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내인권기구는

필연적으로 국가와의 연계 및 입법상의 직무권한에 따라 제약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권고안 문단 68 : All institutions are necessarily restricted by their links with the State).

## 3. 인권위의 설립과정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에 위임되어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인권위의 설립위원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추천하고, 설립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에 인권위 관련 일부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립위원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며, 인권위의 조직과 운영, 예산에 관하여 기본적인 중요사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래야 훼손될 수가 없다.

□ 인권위 설립단계는 아직 인권위 구성 전이므로 정부의 인권 주무부서에서 설립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립정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위의 설립취지와 권한 및 기능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근거법에 반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기에 이를 최초설립시에 국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설립위원의 최종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설립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설립정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인권위 설립후에 인권위의 의결만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 그리고, 인권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규정된 이상 그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령은 세부적인 실무절차에 관하여서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대통령령의 제정과 개정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헌법 제89조제3호)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도 없다.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인권위가 시행령 없이 자체규칙을 바로 갖는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시행령에 따라 규율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은 아니지만 방송위원회도 방송법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기구인데 어떻게 자체규칙만으로 법 이외의 사항을 모두 규정한다는 말인가.

#### 4. 인권위의 관할범위를 한정하여 기본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수사기관 등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유형을 모두

조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사기관 등이 아닌 정부기관 공무원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조사할 수 있고, 차별행위 전반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관할범위가 8가지 인권침해행위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원천봉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감시·보충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주장이다. 앞서 살핀 대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허점」이 생길 때 이를 감시·보완하는 기구이다. 그 「허점」의 대표적 경우가 수사기관 자체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정부의 인권법안은 그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였고, 그 중 마지막 항목(인권법안 제40조제1호'아'목)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상 包括規定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권위가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방대한 제2의 사법기구를 만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호주는 사회적 기본권을 제외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행위와 차별행위만을,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차별

행위만을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조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인권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은 없다. 오히려 UN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언급할 때 모범사례로 이들 국가를 들고 있다.

□ 이하 인권단체들이 특별히 문제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인권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소위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상 프로그램적 규정(입법방침 규정)으로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바로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방대한 국가의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즉 국가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구분되는 것이다.

▲재소자의 진료청구 거부, 신문·서적의 특정내용 삭제배포 등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법령상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인데도 거부 또는 열람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교정기관 공무원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며(인권법안 제40조제1호 '아'목), 관계법령이 잘못되었다면 법령개선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서목록이나 교권침해, 취재권의 침해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상 근거없이 이를 침해하였다면 상기 제40조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도 '법령상 근거없이 그것이 제한·방해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하다.

□ 그리고,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즉, ①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인권에 관한 법령·정책·제도·관행의 개선권고, ③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④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⑤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등의 다양한 인권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16조).

인권위는 이와 같은 일반적 기능과 권한을 통하여 사회일반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관계기관에 인권에 관한 법령·정책·제도·관행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인권침해행위에 관여할 수 있다.

5. 조사대상 기관의 조사거부 사태로 인하여 인권위 활동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것인가



□ 인권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 기관이 국가안보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인권위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법안에 의하면, 자료제출 거부사유로서 ①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수사·재판·형집행에 관한 자료로서 범죄수사와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계되는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제8조에서 국정감사나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는 공무상 비밀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8가지 항목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인권위의 경우는 ①국가안보나 국제관계를 해하는 경우 ②연방장관과 주장관의 교섭내용 ③내각에서의 심의 내용 ④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 ⑤진행중인 범죄수사나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범죄수

사와 관련된 정보원의 존재 및 신원의 누설우려가 있는 경우 ⑦형법집행의 책임이 있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수사관행 및 기법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호주의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 제24조(1)항). 또한 뉴질랜드 인권법 제129조도 호주와 유사한 자료제출요구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인권법안에서 조사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익적 필요상 불가피한 것이며, 규정내용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더 광범위하다거나 추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오히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보다 훨씬 축소되어 있다).

□ 「공추위」소속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제한사유 때문에 인권위가 아무런 조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관계기관이 마음대로 조사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사유를 두지 않을 경우, 인권위가 모든 국가기능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나서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정부기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 등이 조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여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권위가 당해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사제한사유 때문에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제48조제2항).

## 6. 인권위의 결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 인권위의 결정은 높은 도덕적 권위와 국민여론의 압력으로 사실상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외국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에 관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에 구체 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인권위가 「법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인권위의 기본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UN권고안의 설명과 같이 인권위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충(complement)하는 기구이지 국가 사법기구를 대체(replace)하는 기구는 아닌 것이다.

□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예로 들고 있다(여성특위는 시정권고권만을 가지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있지도 아니함).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은 소관 행정업무(독점규제와 공정거래분야, 노동분야)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국가기관들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다루는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가 다른 정부기관의 권한행사를 재판하거나 대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특히 차별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갖게 된다면 모든 정부부서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기구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구속력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권위의 결정이 정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그 판단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권위에 3심제도를 둘 수도 없다. UN권고안도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있는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권고안 문단 50: It is not common for a human rights commission to be granted authority to impose a legally binding outcome on parties to a complaint).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경우 인권위의 조사관이 조사를 마친 후에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권특별법원(Tribunal)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구하고 그 특별법원의 명령에는 1심판결의 효력을 부여하지만, 위 Tribunal은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이며 인권위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 정부의 인권법안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에게 이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30일 이내에 인권위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긴급구제조치 권고의 경우는 48시간내 통보). 또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제64조).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 또는 통보받은 조치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면 권고의 수용을 거부한 국가기관 등은 국민 여론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 시정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를 국가기관 등이 함부로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인권위의 권고에는 사실상의 강제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효과는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의 인권위 운영경험에서 입증되었다.

#### IV. 맺음말

- 지금까지 정부의 인권법안에 관한 「공추위」소속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들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인권보호기능을 전적으로 인권위에 맡겨야 하고 인권위는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대체기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보장기능을 감시·보완하고, 특히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감시·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에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권위가 국민이 선거로 구성된 정부에 우선하여 모든 인권보장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헌법체제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를 짓쳐놓고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를 주도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 법무부는 최초의 시안을 발표한 이후 장시간에 걸쳐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법안에 반영하여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법무부 최초시안은 가히 실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내적으로 우리의 인권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며,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임을 거듭 밝힌다 ☐